

특 허 법 원

제 2 3 부

판 결

사 건 2018나1596 손해배상(지)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림

담당변호사 하지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봉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합55493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20.

판 결 선 고 2019. 4.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홀딩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02,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가운데 20/100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홀딩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9,2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¹⁾부터 2019. 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1) 원고는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변경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17. 1. 3.'에서 '2017. 10. 1.'로 정정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한다)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손해배상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손해배상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K 가맹사업과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와 F 및 G(2016. 12. 30. 사망)은 2007. 6. 13. 각각 2억 원씩을 투자하여 상호와 서비스표를 'H'으로 한 일반음식점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G이 운영을, F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을, 원고가 인테리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원고, F 및 G은 H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음식점의 표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2) G은 2010. 4. 9. 프랜차이즈계약업 등을 목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E홀딩스'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G이 E홀딩스 주식 중 43.4%, 원고의 누나 J와 F이 각 28.3%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G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J와 F이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3. 1. 7. J는 사임하고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J는 2016. 3. 8. E홀딩스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 E홀딩스는 K 가맹점들과 'K 브랜드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각 가맹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영업과 관련한 지원을 하여 그 대가로 각 가맹점들로부터 브랜드이용료를 지급받아왔다.

4) 피고는 2010. 11. 26. 음식점업(한정식과 일식)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주식회사 C에서 2017. 9. 1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 피고는 2012. 4. 30. E홀딩스에게 브랜드운영권리금으로 10,000,000원, 브랜드사용료로 매월 매출의 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을 제16호증의 1, K 브랜드 운영 계약서 제18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K서여의도점을 운영하였다.

5)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2. 4. 2. 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5. 10. 15.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망 G과 배우자 L은 E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동업관계의 해소

1) 원고, F과 G은 2016년 초경 수익 배분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사용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G은 E을 존속회사로 하는 주식회사 E푸드, 주식회사 E네트웍스, E, E홀딩스 4사의 합병과 100억 원 투자 유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 F과 망 G은 2016. 4.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F, 원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G(이하 '을'이라 칭함)은 'K' 사업을 함께 시작했던 동반자로 사업 초기의 약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진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생략

제2조 [합의내용]

1. '을'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E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혹은 매각작업이 원만하게 이행되어 이에 대한 금전적 이득을 '을'이 취할 경우 '을'은 '갑'에게 모든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을'이 취득한 순수 금전적 이득 중 30%(F, 원고 2명 각각 15%)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을'이 직접 금전적 이득을 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E의 신주 발행에 대한 투자 등 '을'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2. '을'이 '갑'에게 1항의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갑'은 '갑' 또는 '갑'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의 권리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가 원만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1) '갑'이 보유하고 있는 E홀딩스의 지분 및 제반권리
 - 2) '갑'이 보유하고 있는 'K'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제반권리
 - 3) '갑' 또는 '갑'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K본점, (주)K동여의도점의 지분, 채권 및 제반권리

단, 3)항의 경우 각 법인(매장)의 별도 매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별도 합의하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특약사항]

1. 본 합의서 제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의 금전적 이득은 없으나 '을'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E에 2016. 12. 31.까지 100억 원의 투자가 유치될 경우 '갑'은 E에게 합계 30억 원(세전기준 / F, 원고 각 15억 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갑'의 요구를 '을'이 수용할 경우 '갑'은 본 합의서 제2조 제2항의 내용을 이행한다. (이하 생략)

2) 원고, F과 G은 같은 날 '본 K 상표의 모든 권리를 E에게 위임하기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와 '본 K 상표의 사용 및 권리를 지분 30%를 받을 시 E에게 바로 이양하며 모든 권리는 지불금액을 받을 시 효력이 발생된다. 단 그전에 상표(E)에서 사용하는 것에 위임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E의 투자유치나 매각은 실패하였고, G은 2016. 12. 30. 자살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과

1) 원고는 2017. 1. 3. 피고에게 'E홀딩스에 납입하는 상표권료를 2016. 12. 1.부터 상표권자인 원고에게 납입하되 2016. 12.분 사용료로 총 매출액의 1% 또는 150만 원 (일부 회사에는 80만 원)을 2017. 1. 5.까지 납입하라. 이를 위반하면 상표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1.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당심 제2차 변론조서 참조).

2)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2017. 1. 10. 1,444,872원, 2017. 2. 3. 1,5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는데, 이후 2017. 4. 17. '원고가 실제 상표권자가 아님에도 상표권자로 등록된 것을 악용, 직원들을 겁박하여 어쩔 수 없이 송금한 것이므로 상표권 사용료로 송금한 2,944,872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피고 등을 채무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26호로 상표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6. 12. 그 채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3, 4, 10, 11, 13, 16, 27 내지 34, 3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J,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7. 1. 4.부터 2017. 9. 30.까지²⁾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한식점업에 사용하여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법 제109조 및 제1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액 11,009,217원(원고가 이미 지급 받은 2017. 1.분 사용료를 제외한 2017. 2.부터 2017. 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매출의 1% 금액의 합계액) 및 위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서비스표권은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원고, F과 망 G 3인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서 단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F과 망 G 3인이 2010. 4. 9.경 공동의 지분으로 E홀딩스를 설립한 이후에는 E홀딩스가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에게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미지급된 서비스표권 사용료 상당의 금액은 8,234,383원에 불과하다[2017. 1. 4.부터 2017. 9. 13.까지의 피고 매출의 1%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합계 2,944,872원(= 1,444,872원 + 1,5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는 원고만이 등록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이

2) 당심 제2차 변론조서 참조.

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서비스표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설령 원고, F 및 망 G 3인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서비스표권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자가 아닌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 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실질적 소유권자인 원고, F 및 망 G 3인이 2010. 4. 9.경 E홀딩스를 설립하였으므로 이때부터 E홀딩스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배타적인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F 및 망 G 3인이 공동으로 E홀딩스를 설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E 홀딩스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배타적인 소유권자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상표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서비스표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원부에는 원고만이 등록권리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고, E홀딩스로 서비스표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아닌 E홀딩스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배타적인 소유권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계약서와 이 사건 확인서는 E이 2016. 12. 31.까지 투자 유치를 받거나 매각되는 경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을 망 G 또는 망 G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 E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을 위임하여 E의 서비스표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의 투자 유치나 매각은 실패하였고 이에 G이 2016. 12. 30. 자살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무렵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상의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계약서는 2016. 12. 31.경 사실상의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E이나 E홀딩스도 이 사건 서비스표권에 관한 권리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역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관한 2017. 1. 3.자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2017. 1. 4.부터는 원고의 허락 없이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갑 제10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홀딩스와 2012. 4. 30. 'K 브랜드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한식점업을 영위해 온 사실, 피고가 2017. 1. 4. 이후 2017. 10. 30.경까지 매장 내 메뉴판, 그릇 및 컵 등 집기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 동안 E홀딩스와 공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7. 1. 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30.까지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가맹점주로서 관리의무를 이행한 바가 없으므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서비스표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 브랜드 운영 계약'은 피고와 E홀딩스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로서 피고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가맹점주로서 관리의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액

1)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7. 1. 4.부터 2017. 9. 30.까지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상표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11,009,217원(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2017. 1.분 사용료를 제외한 2017. 2.부터 2017. 9.까지 각 기간의 매출액 1% 합계액)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단위 : 원)

기간	현금매출	카드매출	매출합계	수수료
2017-01	2,255,000	112,631,030	114,886,030	1,500,000
2017-02	1,002,200	126,260,650	127,262,850	1,272,628
2017-03	981,600	155,818,440	156,800,040	1,568,000
2017-04	531,000	147,281,540	147,812,540	1,478,125
2017-05	1,854,200	124,864,380	126,718,580	1,267,185
2017-06	1,130,900	137,083,440	138,214,340	1,382,143
2017-07	568,400	128,331,670	128,900,070	1,289,000
2017-08	470,200	125,450,760	125,920,960	1,259,209
2017-09	515,700	148,777,070	149,292,770	1,492,927
합계	-	-	1,215,808,180	11,009,217(2017.2.~2017.9.)

2) E홀딩스와 피고 사이의 'K 브랜드 운영 계약'(을 제16호증) 제19조에 기한 브랜드사용료는 '매월 매출의 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원고는 2017. 1. 3.자 내용증명우편에서 피고에게 월 150만 원 또는 총 매출액의 1%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고 피고와 위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2017. 1. 4.부터 2017. 9. 30.까지의 매출액의 1%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총 12,046,89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홀딩스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46,8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 원)

기간	현금매출	카드매출	매출합계	수수료
2017-01	2,255,000	112,631,030	114,886,030	1,037,680원 (= 1,148,860 × 28/31, 2017. 1. 4.~2017. 1. 31.)
2017-02	1,002,200	126,260,650	127,262,850	1,272,628
2017-03	981,600	155,818,440	156,800,040	1,568,000
2017-04	531,000	147,281,540	147,812,540	1,478,125
2017-05	1,854,200	124,864,380	126,718,580	1,267,185
2017-06	1,130,900	137,083,440	138,214,340	1,382,143
2017-07	568,400	128,331,670	128,900,070	1,289,000
2017-08	470,200	125,450,760	125,920,960	1,259,209
2017-09	515,700	148,777,070	149,292,770	1,492,927
합계	-	-	-	12,046,897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제 항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료의 사용료 명목으로 2017. 1. 10. 1,444,872원을, 2017. 2. 3.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해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각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 10. 지급받은 1,444,872원은 2016. 12.분 서비스료권 사용료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31. 전까지는 이 사건 서비스료권이 E 또는 E홀딩스에 위임되어 그 사용이 허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2017. 1. 3.자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2017. 1. 4. 전까지는 E홀딩스와 피고 사이의 'K 브랜드 운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피고의 2016. 12.분 브랜드사용료는 E홀딩스가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E홀딩스의 대표자가 아닌 이용성과의 녹취록(갑 제7호증)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E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위 2016. 12.분 브랜드사용료 채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E홀딩스로부터 위 2016. 12.분 브랜드사용료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2016. 12.분 브랜드사용료를 지급받을 권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10. 송금한 1,444,872원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변제 항변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함께 11,772,035 원을 추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변제 항변을 한다.

그러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으로서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5953,95960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검토결과의 정리

피고는 E홀딩스와 공동하여 9,102,025원(= 12,046,897원 - 1,444,872원 -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0.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4.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판사	우성엽
	판사	이진희

[별지]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0168478호/ 2007. 7. 9./ 2008. 6. 12.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제43류 일본음식점업,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회전문식당업, 회전문식당프랜차이즈업, 해초쌈밥전문식당업, 해초쌈밥전문식당체인업

4. 등록권리자: 원고. 끝.